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2019. 4. 18.~4. 24.

조례안상정

(조례 12건)

거창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9-51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9-52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2
2019-53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19-54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	49
2019-55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2019-56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7
2019-57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7
2019-58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8
2019-59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4
2019-60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0
2019-61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0
2019-62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8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51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2018. 12. 18.)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내용이 조례에 중복·재기재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범위에서 연가사용 기준 등을 정하여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명시된 조항 삭제

- 1) 연가계획 및 허가(현행 제19조제5항·제6항)
- 2) 연가일수의 공제(현행 제20조제1항·제2항) : 연가일수공제 근거를 조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상향 규정
- 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현행 별표 3)
- 4) 경조사 휴가일수(안 별표 3)

나. 연가사용 촉진을 위해 제한근거 삭제(현행 제19조제2항)

- 1) 연가사용을 촉진을 위해 국외여행 등 특별한 경우에만 연가 7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한 조항을 삭제

다. 육아시간의 확대 및 운영기준 신설(안 제23조제4항)

- 1)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1일 1시간 사용
⇒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 사용

라.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기준 신설(안 제23조제12항)

- 1) 1일 최소 4시간 이상 근무, 시간외근무 명령 불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 사용 불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3. 20.~4. 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과 제17조 앞의 “제3장 휴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본직기관의 장”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직기관의 장”을 “군수”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을 “군수”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9조와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제20조(연가일수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제21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군수는 공무원”으로 “제20조제4항”을 “제20조제2항”으로 “공제하는”을 “빼는 병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병가일이”를 “병가일수가”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붙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⑫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1일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하고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하며 별표 3(종전 별표 4)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u>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u>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u>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u>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u>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u> 제10조(파견근무) ① (생략)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u>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u> 제3장 휴가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	<삭 제>▷통상 조문수가 30개 이상일 경우 장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삭제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u>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는다.</u>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u>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u>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u>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u> 제10조(파견근무) ① (생략)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u>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u> <삭 제>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 별표 3 제2호는 법령 재기재에 대하여 불필요한 규정이고, 별표 3 제1호만 위임되어 조례로 정할 사항이므로 별표 3에서 규정하지 않고 본칙에서 직접규정하는 방식으로 함(별표 3 삭제)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으면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또는 공무상 질병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제20조(연가일수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

·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으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개월-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12개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1.~2. (생략)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연가일수의 공제)조항 신설(2018. 12. 18.)로 법령 재기재사항 삭제

제21조(병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1.~2. (생략)

② 군수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항 삭제 2015.6.10.)

③ (생략)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무원인 경우 한 사람만 해당한다.

⑤~⑪ (생략)

<신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⑤~⑪ (현행과 같음)

⑫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1일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삭제>▷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의견18-0025 등 참조)이므로, 삭제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때 원경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 ▷ 제1조 목적조항에서 이 조례는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조례 본칙 내용도 법령 재기재사항 삭제하였으므로 위임조례 취지에 맞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규정 중복·재기재사항은 삭제함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2. 12. 11.>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37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개정 2013. 12. 11. 2018. 12. 18.>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2018. 12. 18.>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 연가 일수}$$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중전 제7조의2는 제7조의5로 이동 <2018. 12. 18.>]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본조신설 2018. 12. 18.] [중전 제7조의3은 제7조의6으로 이동 <2018. 12. 18.>]

제7조의4(연가 사용의 권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본조신설 2018. 12. 18.] [중전 제7조의4는 제7조의7로 이동 <2018. 12. 18.>]

제7조의6(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3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3에서 이동 <2018. 12. 18.>]

제7조의8(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의6제6항·제7항 및 제7조의7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12. 18.] [제7조의5에서 이동 <2018. 12. 18.>]

[별표 1] <개정 2018. 12. 18.>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6제2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	-----------------	----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개정 2017. 7. 2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 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 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 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 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나.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80퍼센트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2)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3) 공보업무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4)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 1)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으로 상근한 경력과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촉탁·잡급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1의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2)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2)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및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5)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다. 기타 경력 1)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시간강사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동일분야 및 1의3)의 경력은 100퍼센트, 비동일분야는 80퍼센트. 다만, 1의2)의 경력은 50퍼센트 동일분야 경력은 100퍼센트 이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 2)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4)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 5) 별정우체국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6) 국·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7)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비동일분야 경력 [2)의 경력은 행 정·경영·연 구·기술분야 에 한한대 70퍼센트 이 내. 다만 7) 의 경력은 50 퍼센트 이내
--	---

비고: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 및 징계관련 업무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1037호(2019.3.4.), 경상남도 인사과-6632호(2019.3.6.)]

자녀돌봄휴가와 육아시간(혹은 모성보호시간)의 같은 날 사용 가능 여부

Q. 소속 공무원이 첫째자녀에 대한 자녀돌봄휴가와 둘째자녀에 대한 육아시간(혹은 모성보호시간)을 같은 날 사용하고자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특별휴가들의 허가가 가능할까요?

A. 자녀돌봄휴가와 육아시간(혹은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을 고려하여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하루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경우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 따라서, 자녀돌봄휴가와 육아시간(혹은 모성보호시간)을 같은 날 사용하도록 허가할 때에는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경우 3시간 이상) 근무시간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같은 날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

Q.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시간외근무 명령을 할 수 있는지?

A.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국가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선도적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그 대상과 시간을 확대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 명령이 불가합니다.

※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을 이미 사용하였으나, 당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는 연가로 변경하여야 함

육아시간의 휴가일수 산정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7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4개월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 현행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삭제 2010.11.30>

⑤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1.7)

제8조 삭제 <2017.7.12.>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2 장 근무시간 <삭제 2010.11.30>

제13조~제16조의2 <삭제 2006.8.14>

제3장 휴가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연가일수 삭제 2015.6.10.)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으면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

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으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개월-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12개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공가 삭제 2015.6.10.)

제2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항 삭제 2015.6.10.)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무원인 경우 한 사람만 해당한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그 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공무원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 청구 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삭제 2006.8.14)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군수는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고, 세 번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11.3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19-52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정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자치분권협의회의 법적 위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거창군의 자치분권 실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동시에 정하고 있음을 규정함

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정함(안 제3조)

- 1) 3년마다 추진계획 수립·시행
- 2) 자치분권 목표와 추진방향,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세부 실행계획,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

라. 정책과제의 추진, 군민참여의 확대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마. 자치분권협의회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제11조)

- 1) 위임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
- 2) 기능 :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
- 3) 구성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각 분야별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자치분권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위원
- 4) 임기는 2년
- 5) 그 밖에 위원 해촉, 위원장 직무, 협의회 운영, 간사를 정함

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경비 지원을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
- 2)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8,690천원 추경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3. 11.~4. 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의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자치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와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국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제5조(군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자치분권을 위한 군민의 각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군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기능)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 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거창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거창군의회, 관계 공무원 등 각 분야별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자치분권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토론회, 학술활동
2. 자치분권 홍보 및 활성화 추진,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사업, 각종 시범사업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12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토론회, 학술활동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사업, 각종 시범사업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행정과장 신 영 수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501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원칙·추진과제·추진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1.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치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등) ① 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0.]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5. 21.] [대통령령 제28894호, 2018. 5. 21., 일부개정]

제22조의2(지역별 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별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별 협의회 의견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21.]

□ 「지방재정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53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법무부 권고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는 국가가 구축·운영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 하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무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체계적·통일적으로 지원을 수행함에 따라 그 내용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불필요한 용어 정의 정비(안 제2조)
- 나.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장 추가
(안 제7조제2항제4호)
- 다. 협의회의 정기회 개최 횟수 변경(안 제10조제2항)
 - 1) 분기별 1회 ⇒ 반기별 1회
- 라. 민간단체 지원사업 구체화함(안 제15조)
- 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과 중복되는 범죄피해 지원조항 삭제(현행 제17조, 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제5조·제33조·제34조
 - 2)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37,800천원 확보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3. 11.~4. 1.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 제5조 앞의 “제2항 지역치안협의회”, 제15조 앞의 “제3장 민간단체 및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 등”을 삭제한다.

제1조 중 “범죄행위 피해자 및 민간단체”를 “민간단체”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약자"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으로 거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설치 및 기능)”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안전보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 제4호) 중 “협의회의 의장이”를 “군수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장

제8조제2항 중 “의장은”을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분기별 1회”를 “반기별 1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실무위원회”를 “실무협의회”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5조(종전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민간단체 지원)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우범지역 환경개선과 범죄예방 사업
2. 각종 폭력예방과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전문상담 사업
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종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장 총칙</u> <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u>범죄행위 피해자 및 민간단체</u>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사회적 약자</u>”란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2. “<u>범죄행위</u>”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u>범죄예방 봉사활동</u>”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u>민간단체</u>”란 범죄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u>제3조(군의 책무)</u> ① 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과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은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삭 제>▷ 장 삭제: 장은 30조문 이상일 경우 장으로 나누어 구분 <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u>민간단체</u>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u>사회적 약자</u>”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으로 거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2호 범죄행위) 범죄피해 보호법에도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며 정의 불필요 ▷(제3호 봉사활동) 누구나 알고있는 용어는 정의 불필요 ▷(제4호 민간단체)제15조 민간단체 요건으로 충분히 설명됨 <u>제3조(군의 책무)</u> 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과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삭 제>

범죄행위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치안협의회

제5조(설치 및 기능)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 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1.~4. (현행과 같음)
5.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생략)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거창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거창군의회 의장
2.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3. 거창소방서장

<신설>

4.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삭제>

제5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기능)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 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1.~4. (현행과 같음)
5.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제17조 범죄피해 지원규정 삭제에 따라 삭제
6. (현행과 같음)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거창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거창군의회 의장
2.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3. 거창소방서장

4.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장

5.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생략)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생략)

<신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필요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민간단체 및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 등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p209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편의상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217 회의록 작성주체는 군수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필요경비 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하면 되므로 삭제

<삭제>

제15조(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4. (생략)

제16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7조(범죄피해 지원) 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피해(살인, 성범죄 피해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00만원 이내의 지원금(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에 한정한다.

③ 지원대상자 선정은 군수 또는 거창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추천서에 따라 추천하면 협의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제16조(민간단체의 요건)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4. (현행과 같음)

제15조(민간단체 지원) 군수는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우범지역 환경개선과 범죄예방 사업
2. 각종 폭력예방과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전문상담 사업
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삭 제>

▷ 법무부 권고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은 국가·주도 사업으로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통해 지원토록 함에 따라 삭제

제18조(지원금의 지원 제외) 군수는 제17조에서 정한 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없이 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	---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작 제>

▷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없이 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15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우범지역 환경개선과 범죄예방 사업
2. 각종 폭력예방과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전문상담 사업
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 중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2019년도 예산 5천만원 미만임

나. 2019년도 본예산 : 37.8백만원

- 1)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 15백만원
- 2)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일반운영비) : 17.8백만원
- 3)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범죄피해자 지원) : 5백만원

작 성 자 행정과장 신영수

관계법령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개정 검토 의견

① 검토배경

- ‘16. 2. 18. 우리 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관련 검토 의견을 배포하였는데, 이후 제·개정된 일부 조례가 범죄피해자보호법(이하 ‘범피법’) 취지에 맞지 않아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 구축 및 지자체별 대책 마련에 혼선을 초래함
 -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는 최근까지도 다수의 지자체로부터 조례 제·개정 및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추진 관련 법률검토 의견을 요청 받고 있음
- 범피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조례 제정에 참조할 수 있는 조례안 형식의 참고자료를 안내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② 범죄피해자보호법 관련규정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기본계획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취지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망)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망) (제4조 제1호)

- 범피법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국가’가 구축·운영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망) 하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무
- 이에 따라 각급 검찰청 및 법무부에 등록한 59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을 통해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체계적·통일적으로 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의 경제적 지원인 손실 복구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지원 체제(망)의 개요**

○ **경제적 지원의 종류**

구분	주요 요건	비고
범죄피해 구조금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입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 피해를 입거나 1~10 단계 장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7년 하반기 기준, 유족구조금은 최대 1억 1,283만원, 장해·중상해구조금은 최대 9,402만원까지 지급 가능	검찰청 심의 통해 지원
치료비 (심리치료비)	-범죄피해로 5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긴급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범죄피해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생계비)가구원수 따라 월 50만원 이상 최대 3개월 지원 -(학자금)자녀 1인당 50~100만원씩, 최대 2회 -(장례비)사망피해자 1인당 300만원까지	"
간병비, 요양병원 치료비, 돌봄비용	-범죄피해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간병비·요양병원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및 강력범죄피해로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총 1,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요양치료비) 총 5,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돌봄비용) 30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연합회 심의 통해 지원

* 5주이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 항목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함

○ **경제적 지원의 절차**

-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검찰청 등을 통하여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결정은 경제적 지원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검찰청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

□ **지자체의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협력할 의무**

- 지방자치단체는 범피법 제5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할 책무가 있는 바, 구체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 구축·운영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 특히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는 동법 제 13조에 따라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 등 국가의 시책에 협력해야 하는 보다 구체적인 의무가 있음

※ 동법 제13조 제2항은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그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

- 범죄피해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 및 지자체의 협력의무를 고려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동법 제7조 제1항은 국가 및 지자체에게 대책 마련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헌법 제30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국가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된 의무라 할 것인바, 위 조항은 지자체에게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취지가 아님

④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의 기본방향

□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지향

- 범죄피해법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엄격한 요건을 갖춰 법무부에 등록한 법인을 통해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는 것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수행하기 위함임
- 조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망)에 포섭되지 않는 미등록 단체나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정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될 우려가 높음
 -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망)에서 그 지원 내역이 전혀 파악되지 않아 과잉보상을 받거나 동일한 피해에 대해 이중으로 보상을 받는 문제가 생김
 - ※ 위원회를 통한 경제적 지원을 받은 후 다시 검찰에 신청한 경우, 위원회의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이중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우려가 있음
 - 지자체가 세입의 상당 부분을 국가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으로 전국적인 체제(망)을 운영하는 사업에 중복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경우 국가 재정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보호·지원

- 한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를 통해 일관적인 기준에 따른 체계적인 요건심사가 이뤄지는 바,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공평한 보호·지원이 제공됨
- 조례를 통해 별도의 위원회 등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망) 하의 통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제각기 다른 기준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되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형평성 있는 보호·지원을 받기 어려움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특수성 고려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형사사법절차와 맞닿아 있는 특수성이 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해야 함
-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적인 판단이 결부되어,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피해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될 가능성도 존재함

※ 검찰 수사 또는 법원 재판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성급한 지원으로 가해자에게 지원하여 문제가 될 수도 있음

- 위와 같은 특수성을 신중하게 고려하기 어려운 비전문적 단체를 통한 피해자 지원과 이에 수반된 과잉 홍보는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5 결론

- 미등록 법인이나 위원회를 통한 경제적 지원 사업의 수행은 중복 지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지역 간 불균형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결국 기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와 그 추구하는 방향을 달리하는 것임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60% 이상(153곳)의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임

- 지자체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 체제에 포섭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산 및 인적 구성을 갖추어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통하는 것을 적극 권장함

- 지자체별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망) 내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는 지원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범죄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보호·지원을 강구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상호 보충적인 관계를 맺길 기대함

- 위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향후 국가·지자체 협조 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조례안의 형식으로 별도 첨부함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83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

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6. 12. 2.>

② 국가는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위탁기관(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

안건번호	의 건 15-0241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일자	2015. 9. 16.
안건명	각종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 질의요지 가. 각종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과 범죄예방 및 치안활동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각종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과 범죄예방 및 치안활동 교육 사업 등 고양시조례안 제4조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략~ 둘째, 고양시에서 각종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과 범죄예방 및 치안활동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					

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 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과 범죄예방 및 치안활동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고,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현행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범죄행위 피해자 및 민간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2.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민간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과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은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행위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① 민간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

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치안협의회

제5조(설치 및 기능)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 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4.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

제6조 삭제 2015.4.29.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거창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거창군의회 의장
2.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3. 거창소방서장
4.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는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업무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필요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민간단체 및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 등

제15조(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군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둘 것
2.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될 것
3. 설립의 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제16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7조(범죄피해 지원) 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피해(살인, 성범죄 피해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00만원 이내의 지원금(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에 한정한다.

③ 지원대상자 선정은 군수 또는 거창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추천서에 따라 추천하면 협의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제18조(지원금의 지원 제외) 군수는 제17조에서 정한 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19-5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폐지이유

지역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를 제정·시행하였으나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내용을 중복 재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3. 8.~3. 28.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운영 현황

가) 폐지 : 사천시

나) 위원회만 폐지 : 창녕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조례와 법령 비교

조 례	법 령	비 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정보화추진의 기본원칙)	○ 정부와 지자체의 정보화추진 원칙
제4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 정부는 5개년 계획 수립 (지자체는 의무사항 아님)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지자체 부문 포함
제5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 수립
제6조 (정보화추진위원회) 제7조 (위원회의 기능)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삭제 - 위원회구성 제7조 삭제 - 위원회의 운영	○ 2013. 3. 23 국가정보화 추진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삭제 ○ 지역정보화 추진위원회 운영 의무사항 아님
제8조 (정보화책임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 (정보화책임관)	○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정보화 업무 총괄 책임관 임명
제9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장 제1절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 공공정보화, 지역정보화 추진
제10조 (민간기관 등과 협력)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9조 (민간기관 등과 협력)	○ 공공정보화 추진에 민간투자 유치
제11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0조 ~ 제23조의3 - 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정보통신망의 연동, 데이터 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사용 ○ 민간데이터 센터 활용 가능
제12조 (민원사항의 전자적인 처리)	[전자정부법]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6조 ~ 제38조	○ 정부와 지자체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13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절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제25조 ~ 제27조	○ 정부와 지자체는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제14조 (행정정보의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 공개
제15조 (정보화교육)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제16조 (정보문화의 창달) 제18조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장 제1절 정보이용의 건전성 보편성 보장 및 인터넷중독의 예방 해소	○ 정보화 역기능 방지
제19조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7조 ~ 제3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국가 및 지자체는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3. 입법의 필요성 판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자치법규는 제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입법체계적으로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그 재기재한 법령의 내용이 개폐되는 경우에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치법규에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반론적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법률이 개폐되었음에도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 의견제시 의견제시 15-0244)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자치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행정지도나 예산조치만으로 해당 정책의 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민에 대한 급부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정책의 시행을 위해 자치법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자치법규 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국가사무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도지사의 규칙의 제정 등은 법률에 특별한 위임이 없는 한 제정할 수 없다. 또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므로 관계 법령을 분석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 2019. 2. 22] [법률 제15369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정보화"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식정보사회"란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행정,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5.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6.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8.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9.~20. (생략)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4.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과 시행계획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분석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항을 점검·분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활용

7.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경우 제12조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임명된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3. 5. 22., 2015. 6. 22.>

1.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
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여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와 인터넷중독의 예방·해소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정보화사업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중복되는 지 여부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

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국가정보화의 추진

제1절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공공정보화"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정비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이용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정보통신융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정부는 인터넷, 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융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국가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국가정보화 관련 영역과의 연계)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①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이하 "정보화 선도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보화 선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3(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과 지원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국가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평가
5.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절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활용과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기본방향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3.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및 공동이용
4.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체계 구축

5.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6.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7.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시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보존 및 전송

2.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

3.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이하 "중요지식정보자원"이라 한다)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유통, 표준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에 드는 비용은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관리, 유통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유통·활용·표준화 및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절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 및 인터넷중독의 예방·해소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인터넷중독 관련 계획 수립의 협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7(인터넷중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의 창달
2. 정보격차의 해소
3.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4.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절 정보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 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며,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정보통신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3. 정보통신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정보통신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제41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이용자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2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식

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위반으로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진정의 접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제4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홍보,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비영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하 "초고속국가망"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영리기관등이 초고속국가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 구축·관리·운영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6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①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공동구·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영·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에 따른 전송·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국가기관등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이미 구축·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재구축할 때에는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48조(연차보고 등) ① 정부는 매년 국가정보화의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실태
2.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실태
3. 정보문화 시책의 추진 실태
4.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5. 인터넷중독 실태 및 조치 현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지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50조(자료 제출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 및 조정의 지원
3. 제24조에 따른 국제협력
4. 제27조에 따른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
5. 제48조에 따른 연차보고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3. 삭제 <2017. 10. 24.>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2. 22] [대통령령 제29118호, 2018. 8. 28, 일부개정]

제4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7

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8월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어 있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점검·분석 의견의 제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분석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매년 9월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분석 의견을 매년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확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분석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분석 의견을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점검·분석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확정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정보화사업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기능 사무기기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또는 고도화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경우
4.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정보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사유
2.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내용과 예산
3. 제2호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정보화사업의 내용과 예산

③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보화계획에 상응하는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으로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자원 현황 등의 작성·관리)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이하 "정보자원현황등"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자원현황등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자원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보자원현황등 작성·관리의 기본방향
2. 정보자원의 현황 및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의 도입 및 투자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자원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자원관리방안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법 제17조에 따라 민간 분야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 기반 조성
2.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 교육, 컨설팅 및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3. 그 밖에 민간 분야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① 국가기관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식 및 정보의 공유·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 및 정보의 공유·유통을 위한 표준의 설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국가기관등 간의 정보 공동활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식 및 정보의 공유·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 행정업무 처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기본 데이터베이스로 지정하고 다른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동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의 요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데이터

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목표
2.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목표
2.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에 관한 사항
3.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1조(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을 5년을 단위로 수립하고,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시행계획을 확정·공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 및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시행계획 중 예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 및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 및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관 지식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대상·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성과 및 기관 간의 성과 비교
2. 지식정보자원의 현황 및 활용도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성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성과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결과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지식정보자원의 활용 촉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수집·연계 및 통합 관리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①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안을 제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표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식정보자원(이하 "중요지식정보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의 목적 및 사유
2. 지정하려는 지식정보자원의 종류 및 내용
3.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현황 및 지정하려는 지식정보자원의 관리계획

4. 그 밖에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전문가로 평가기구를 구성하여 해당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특별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지식정보자원에 대하여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지털화 및 상호연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및 상호연계를 추진할 때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표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공동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공동으로 중요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여 유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지식정보자원의 수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디지털화된 형태로 지식정보자원을 수집·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민간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
2. 사업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
3. 지원받으려는 내용
4.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④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민간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내용 및 규모
2.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 능력 및 최근의 활동실적
3.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을 위한 해당 시책사업 및 활동의 사회적 수요와 파급효과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및 지원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인터넷중독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3.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전망과 추진전략
4.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와 개발
5.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상담 및 홍보
6.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신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인터넷중독 대응방안
8.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관련 국제협력
9.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계획의 수립지침을 전년도 1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추진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 확보 및 교육·관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의7(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실시) ① 법 제30조의8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8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공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터넷중독 현황 및 사례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3.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 방법

4. 그 밖에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를 법 제30조의8제3항에 따라 전산입력정보 또는 서면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검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법 제30조의8제4항에 따라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교육 부실의 인정기준, 관리자 특별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자통신기본법」에 따라 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 실태조사
2.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3.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 개발·생산 사업자: 해당 정보통신제품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의 내용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 제공 사업자: 해당 콘텐츠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의 내용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이하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이라 한다) 개발·보급 사업자: 해당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의 내용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정보통신제품 또는 콘텐츠의 개발·생산·제공 실적 또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개발 실적
2. 개발·생산·제공·보급하려는 정보통신제품, 콘텐츠 또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유용성
3. 정보통신제품의 생산계획, 콘텐츠의 제공계획 또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등) ① 법 제3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에 따라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제품의 활용성
2. 지원대상자의 정보통신제품 활용 능력
3.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여건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7.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컴퓨터와 인터넷 등에 관한 기본교육
2.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35조(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그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평가 또는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시스템

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는지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평가를 요청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6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저장·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장비에 음란물 및 폭력물 등 불건전한 정보에 대한 접속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청소년이 정보통신서비스를 건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7조(이용자의 위해 방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통신 관련 기기 및 역무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관련 기기 및 역무 등에 관한 이용자 위해 방지기준, 그 용도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 관련 기기의 제조자·수입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실태조사) ①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기관등의 국가정보화 추진 실태
2. 국가기관등의 민간 분야 정보화 지원 실태
3.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제품의 활용 및 이용규범에 대한 정보문화 실태
4.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접근·보유·이용 등에 관한 정보격차 실태
5.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해당 기기에 대한 중독 실태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실태 및 그 추진 성과
7. 국가기관등의 지식정보자원 보유량 및 디지털화 현황
8. 국가기관등의 지식정보자원 및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 실태
9. 그 밖에 국가정보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국가기관등,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기본계획)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4.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5.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의 활성화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시행 2017. 12. 12.] [행정안전부훈령 제19호, 2017. 12. 12., 일부개정.]

I

총 칙

1. 목 적

○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산하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 규정

2. 적용 범위

○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산하 기관에서 정보시스템, PC 파일, 종이, 개인정보영상 처리기기 및 모바일기기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

3. 개인정보보호 원칙 (표준지침 제4조)

○ 수집 목적 명확화 및 이용 제한의 원칙

- 수집 목적을 명확히 특정하고 그 특정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처리

○ 수집 제한의 원칙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 정보내용의 정확성의 원칙

- 개인정보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 유지

○ 안전성 확보의 원칙

- 개인정보의 분실 또는 불법 접근, 파괴, 사용, 변조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 공개 원칙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의 원칙

- 개인정보 파일대장·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개되어야 하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요구 등 권리 보장

4. 용어 정의 (법 제2조, 표준지침 제2조)

가.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소득, 학력, 성적, 직업, 전자우편, 영상, 통화내용, 신용, 부채, 인터넷 접속 IP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와 개인에 대한 제3자의 의견이나 평가 등 주관적 정보 포함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등

나. 개인정보파일

○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다. 개인정보보호 대상

○ 종이, 정보시스템, PC,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모바일기기 등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II

개인정보보호 추진 체계

1.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지정 (법 제31조, 영 제32조, 표준지침 제22조)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정책기획관

○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정무직 공무원이 장(長)인 경우 : 3급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

- 그 외 기관 : 4급 이상 또는 그에 상응 하는 공무원

- 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지정·변경 시에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공문으로 통지
 ☞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법 제31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말함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역할

-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제·개정
-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권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파일 및 대장 등록·파기 승인, 관리 감독
- 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지휘·감독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다음 해에 수행할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지정

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당연직) : 모든 부서의 장 - 과장급

나.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역할

-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
- 개인정보파일 지정·관리·보호·파기
-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방침 수립·시행 및 공개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시행
-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3.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법 제28조, 표준지침 제15조)

가.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를 수집·열람·수정·삭제 등 직접 처리하는 자

나. 개인정보취급자 역할 :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

Ⅲ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1. 개인정보파일 공개 (법 제32조, 영 제33~34조의2, 규칙 제3조, 표준지침 제49~53조, 제57조, 제60~61조)

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등록·신청>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검토·승인>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소속·산하기관 → 본부)



<공 개>

행정안전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파일을 보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파일(등록·변경) 신청서(별지 1호) 제출 및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등록
-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신청파일에 대하여 검토·승인
-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승인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개인정보보호정책과)이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등록·공개됨

☞ 등록된 항목 중 하나라도 변경된 경우에는도 60일 이내 재등록하여야 함
단, 생성·변경이 상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1년 1회 변경 등록 가능

나. 개인정보파일 등록 예외사항

- 당해 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 기관 내부 구성원,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자, 출입기자 등은 등록 제외
-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파일
-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등 다른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된 파일
-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분석을 위해 수집·제공이 요청되는 개인정보
-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 자료·물품·금전 송부, 1회성 행사 등의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 등록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의 관리·감독 하에 안전하게 관리

2.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법 제30조, 영 제31조, 표준지침 제19~21조)

가.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 공개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별지 2호) 수립
- 반드시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명칭 사용,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하여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색깔 등 조치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공개 내용
 -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 전·후 비교 내용

나.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
-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가 어려운 경우
 - 정보 주체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관보에 게재
 -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 게재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

IV

개인정보 처리

IV-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1.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처리 제한 (법 제23~24조의2, 영 제18~19조,)

- 정보주체에게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처리에 대해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로 제한
- 주민등록번호와 대체수단에 의한 가입 방법을 같은 화면에 제공

☞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승인 후 보유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법 제15조~16조, 표준지침 제6조, 제14조)

가. 가능 범위

-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1)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2)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체결된 계약 내용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서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3)
- 정보주체로부터 명함 등을 제공받아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의사를 표시하거나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곳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가능
-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의 임금 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하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개인정보 제공 (법 제17~18조, 영 제15조, 규칙 제3조, 표준지침 제7~8조)

가. 용어 정의

○ “제공”이란

- ▶개인정보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 등의 물리적 이전
-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제3자의 접근 권한 부여
- ▶제3자와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

○ “제3자”란

-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한 해당 기관을 제외한 모든 자 (수탁자는 제외)

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가능 범위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개인정보 수집근거가 6페이지의 (1), (2), (3)인 경우 그 수집목적범위내 제3자 제공 가능

다. 정보주체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라. 제공시 안전성 확보

○ 제공자의 의무

-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방법·기간·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 특히,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별지 3호)에 기록·관리

○ 제공 받는 자의 의무

-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문서로 통지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

4.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는 방법 (법 제22조, 영 제17조, 표준지침 제12조)

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별도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개별 동의 표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동의* ▶민감정보 처리의 동의

* 주민등록번호는 별도 동의 획득한 경우에도 처리 금지

나.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정 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 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 수집 가능
- 법정 대리인의 거부가 있거나 동의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

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동의서에 직접 서명
- 전화를 통하여 동의내용을 알리고 동의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림
- 전화로 동의내용을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동의내용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로 동의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전자우편으로 동의내용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사 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등

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중요 내용 표시 방법

-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법정대리인 포함)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받을 때에는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 명확히 표시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처리하려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명확히 표시하는 방법

▶글씨는 9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하되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할 것
▶다른 색의 글씨, 굵은 글씨 또는 밑줄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
▶중요한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해당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요약하여 제시할 것

IV-2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이전

1. 개인정보 처리 위탁 (법 제26조, 표준지침 제16~17조)

가. 위탁자 임무

○ 위탁문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수탁자 선정 시 인력, 물적시설, 재정능력, 기술력, 책임능력 등을 고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수탁자는 위탁기관의 직원으로 봄)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수탁자 교육 및 감독

나. 수탁자 임무

○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참고 1)에 따라 조치

-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은 기관 내부 업무를 외부의 제3자에게 위탁하며 처리토록 하는 일종의 아웃소싱(Outsourcing) 경우를 말하는 것임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다른 행정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이전 (법 제27조, 영 제29조)

가. 해당 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이전 시 통지 내용

- ▶개인정보를 미전하려는 사실
- ▶미전받는 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미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나. 통지 방법

-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직접 통지
-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직접 통지가 어려운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IV-3 개인정보 보호 조치

1. 개인정보 영향평가 (법 제33조, 영 제3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가. 영향평가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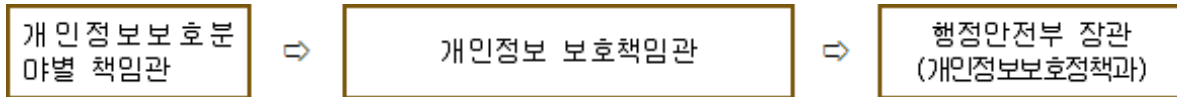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과제 도출

나. 영향평가 대상

-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 100만명 이상 정보주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 영향평가 결과 제출

○ 영향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게 제출



라. 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 행정안전부 장관(개인정보보호정책과)이 지정한 평가기관에 의뢰
- 영향평가 수행 시기 : 대상시스템의 설계완료 전에 영향평가 수행하여 그 결과를 설계·개발에 반영
- 개선계획의 반영 여부 확인 : 정보시스템 감리시 확인, 감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테스트 단계에서 확인
- 영향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등록
- 세부내용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참고 2) 참조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29조, 영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보유 형태	조치 사항
정보시스템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비밀번호 등 암호화 저장 및 송·수신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공공아이핀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사용자별 개인정보 접근 기록 관리, 암호화 전송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 ▶접근권한의 제한, 출입통제·잠금장치 등 물리적 조치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및 필요한 보완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민감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시 접근 제한 ▶일정시간 업무 중단 시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 차단 ▶재해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원격지 백업 등 물리적 조치
관리용단말기	▶목적외 사용 금지,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 보안조치, 인가외 접근통제
모바일기기	▶비밀번호 설정 및 분실 시 원격 잠금 기능 등의 조치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PC 파일	▶파일 암호화 적용, 개인정보 인터넷 PC 보관 금지
종 미	▶시건장치 보관, 유실방지를 위하여 대장 작성 및 주기적 점검

○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참고 1) 참조

3.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조치

- 홈페이지 게시내용에 대해 책임부서 지정, 부서장 결재 후 내용 게시
- 게시판 등 글쓰기 화면에 개인정보 노출 경고메시지 안내
-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있는 페이지에 대하여 검색 로봇 배제 기능 설정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차단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4.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법 제8조의2조, 영 제9조의3)

가. 침해요인 평가 목적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 개인정보 침해 유발요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개인정보보호

나. 침해요인 평가 대상 :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제·개정 법령안

다. 침해요인 평가 방법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뢰

IV-4 개인정보 파기

1. 개인정보 파기 (법 제21조, 영 제16조, 표준지침 제10~11조, 제56조)

가. 개인정보 파기(삭제) 계획 수립

- 개인정보가 보유기간 만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
 - 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만료 등에 따른 구체적 파기 시점·방법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 파기 계획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시행 가능

나. 개인정보파일 파기 절차



※ 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파일 등록 삭제 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개인정보파일 파기결과 보고

다. 개인정보파일 파기 방법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파기
 -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포맷 또는 덮어쓰기 수행
-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시 상기 방법의 파기가 어려운 경우
 -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 :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V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 적용 범위 (법 제25조, 표준지침 제35조)

-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그의 개인영상정보
- 허가를 받은 사람만 출입이 허용되는 건물 내부공간은 '비공개 장소'로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대상 제외

☞ 다만,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준용토록 함

2. 설치·운영 기준 (법 제25조)

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설치·운영이 금지된 경우

-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의 내부
 - ※ 구금·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구금·보호하는 시설은 가능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사전의견 수렴 (법 제25조, 영 제23조, 표준지침 제38조)

-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방법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20일이상)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4. 안내판 설치 (법 제25조, 영 제24조, 표준지침 제39조)

가. 안내판 설치 방법

-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판독가능하게 설치
 - 건물 안에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시설 전체

가 설치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가능

- 안내판에 의무 기재 내용

▶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직책) 및 연락처

나. 안내판 설치 예외 사항

-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보안업무규정』 제2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5.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법 제25조, 표준지침 제45조, 제47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녹음기능 사용 금지
- 개인영상정보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암호화 전송, 개인정보영상파일의 비밀번호 설정 등)
- 처리 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열람·제공·파기 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6호) 작성 등
-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법 제25조, 표준지침 제36조)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별지 7호) 마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시행 가능

나.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 설정

- 개인영상정보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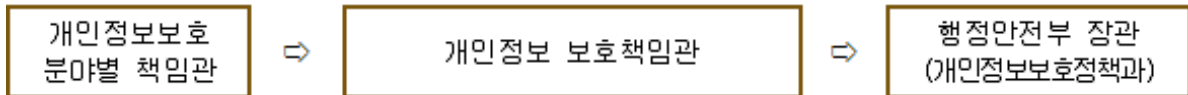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점검 (표준지침 제48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영상처리기기의 점검사항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게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 privacy.go.kr)에 등록

<점검·등록>

<승인>

<공개>



○ 점검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 내용
-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정보주체 권리행사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VI

개인정보 유출 대응

1. 개인정보 유출 정의 (표준지침 제25조)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 홈페이지 등에 단순 노출된 경우에는 유출로 보지 않음

2. 개인정보 유출 통지 (법 제34조, 영 제40조, 표준지침 제26~27조)

가. 유출 통지 시기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 알림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유출사고 최초 발생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 입증 책임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림
 -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유출 방지를 위한 접속경로 차단
 - 유출된 정보의 삭제 및 외부 접근기록 등 증거 보존 조치
 - 취약점 점검·보완 등

나. 유출 통지 항목

- 정보주체에게 통지 항목

-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 ▶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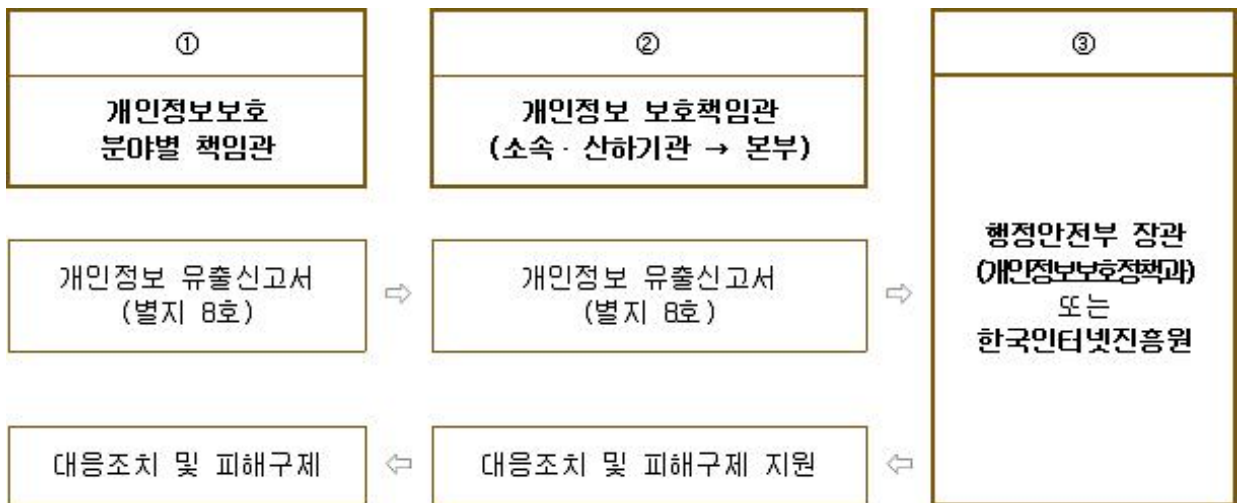
- 통지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 한 경우
 - 유출이 발생한 사실과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을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림

다. 유출 통지 방법

-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 연락처가 없어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 게재
-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출 통지 항목을 7일 이상 게재

3. 유출 신고 (법 제34조, 영 제39조, 표준지침 제28조)

가. 유출 신고 절차



- ※ 보통은 ②까지, 1천명 이상 유출된 경우에는 ③까지 신고
- ※ 소속·산하 기관은 유출 즉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신고
- ※ 피해복구 조치 등 수행 시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전화상담 창구의 회선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상이나 배상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계획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

나. 유출 신고 방법

- 전자우편, 팩스,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로 신고
-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로 사전 신고 후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별지 8호) 제출

VII 정보주체 권익보호

1.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법 제20조, 표준지침 제9조)

가. 처리 기한

- 정보주체의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출처 등 고지를 정보주체가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결과를 알림

- 정보주체의 수집출처 등 고지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수집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적용 제외

나. 수집출처 등 고지 내용 및 방법

- 고지내용 : 개인정보 수집 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 요구 권리가 있다는 사실
- 고지방법 : 서면,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

다. 수집 출처 등 고지를 거부하는 경우

-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거부 가능한 경우
 - 요구 대상 개인정보파일이 등록·공개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정보 처리 요구 (법 제35조, 제37~38조, 영 제41조, 제43조, 제45조, 규칙 제3조, 표준지침 제32~33조)

가. 개인정보 처리 요구 절차 및 방법

정보 주체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열람·일부열람·열람연기·열람거절) 통지서(별지 11호) 단,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 생략 또는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별지 12호)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별지 10호)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또는 열람확인 또는 거부사유 통보

-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구

-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경우 별지제 호서식을 작성·제출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서도 요구 가능

나. 요구 처리기한

- 개인정보 처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림

다. 대리인에 의한 처리 요구 가능

- 정보주체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또는 자신이 위임한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요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요구 가능
-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경우에는 위임장(별지 13호) 제출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처리요구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반드시 확인

라. 처리요구에 대한 수수료 등 비용 청구 가능

- 열람 등을 요구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를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 가능

-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규칙』(참고 3) 준용
- 단,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개인정보 열람 (법 제35조, 영 제42조, 표준지침 제31조)

가. 개인정보 열람 제한 또는 거부 가능한 경우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

☞ 열람요구사항 중 일부가 열람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제한 등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열람 연기

- 열람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연기 가능,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이행

다. 제3자 제공현황에 대한 열람청구를 받은 경우

- 당해 열람청구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사안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열람청구에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 가능

4. 개인정보 정정·삭제 (법 제36조)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단,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5. 개인정보 처리정지 (법 제37조)

- 공개된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 가능
-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의무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6. 손해 배상 청구 (법 제39조)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고의·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 책임
 - 법 의무사항 준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감경 가능

7. 침해 사실 신고 (법 제62조, 영 제59조)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

- 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로 신고 가능
○ 침해사고 발생시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가능

VIII 보 칙 [표준지침 제63조]

1. 법 시행('11. 9. 30) 전에 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 조치
 - 가. 근거 법령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당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적법한 처리로 봄
 - 단, 법 시행 이후 기존의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정보를 새롭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라야 함
 - 나. 법률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제공받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 기 수집한 개인정보의 법 준수를 위하여 새롭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기 수집한 개인정보 활용 가능
 - 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영향평가 실시

□ 현행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군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의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거창군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거창군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거창군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추진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지역정보화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언론계 등의 전문가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군수는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으면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삭제 2015.12.30.)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처리·활용·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55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2019. 7. 1.)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중증/경증)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안 제2조)

- 1) 감면대상 :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 2) 장애정도 규정 신설
 - 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감면기한 연장 : 2021. 12. 31.⇒ 2022. 6. 30.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 명문화(안 제3조)

-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감면 기한 명시함 : 2020. 12. 3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8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3. 19.~4. 8.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제3항·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2.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고, 2019. 6. 30.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2조제3항(중전 제2항) 중 “이전등록하고”를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본문에 따른”을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2.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고, 2019. 6. 30.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신 설>

② 장애인인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u>이전 등록하고</u>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 <u>본문에 따른</u>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③ 장애인인 대체취득 [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u>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u>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 <u>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u>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2021년부터 법으로 감면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 감면기한 명시하여 예측가능하게 함
---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조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아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 제1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대상 단체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2. 면제 내용

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나.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라.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重傷痍者)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8. 12. 24.>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학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③ 삭제 <2018. 12. 24.>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8. 12. 24.>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

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1.>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 2019. 2. 12., 타법개정]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 4. 17., 2012. 12. 21., 2015. 12. 31., 2016. 12. 30.>

② 법 제17조제1항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12. 31., 2016. 12. 30.>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 12. 28., 타법개정]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①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같은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따른다.

②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진료에 관한 사항은 진료기록 자료, 검사결과 자료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관련 기록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증 서식 등) ① 등록증의 재질·규격 및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표기사항의 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재질 : 플라스틱

2. 규격 :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

3. 표기사항 : 장애인의 성명·주소·사진·주민등록번호·장애종류·장애등급·등록일, 보호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발급기관의 직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함으로써 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장애등급 조정) ①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2., 2010. 3. 19., 2011. 2. 1.>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상태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인단 및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12.>

□ 한글 맞춤법

부록 문장부호

1. 마침표

(2)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쓴다.

1919. 3. 1. 10. 1.~10. 12.

□ 현행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조(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1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56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광객 유치지원 경쟁에서 지리적 약점을 보완하고자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제2조)

나. 관광객 유치지원 기준 확대(안 제4조)

1) 내외국인 관광객 단체를 군내 숙박시설에 알선하여 투숙한 경우
⇒ 국내외 관광객 유치

2)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위임

다. 불필요한 규정 정비(현행 제10조제2항,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제76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30,00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예산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3. 11.~4. 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조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다른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행정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 지원에 따른 규모”를 “재정지원에 따른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제9조 중 “관광사업자 단체, 관련법인 또는 기관”을 “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규정에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상위법령 위임범위에 위배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지므로 상위법령 위임을 받아 정하는 위임자치법규임을 명확히 표시「법제처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 P7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광숙박업소와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 및 한옥체험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숙박업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시설을 말한다.	<삭 제> (제1호)▷ 제4조제1항제1호 삭제로 조례에 안 나오는 용어임. 규칙 별표 이동 기술 (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삭제로 조례에 안 나오는 용어임. 규칙 별표 이동 기술 (제3호)▷ 법령 용어 정의는 위임조례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규정 불필요 (제4호)▷ 제9조에서 삭제함에 따라 삭제 (제5호)▷ 제4조제1항제1호 삭제로 조례에 안 나오는 용어임. 규칙 별표 이동 기술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 단체를 군내 숙박 시설에 알선하여 투숙한 경우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의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따른 규모,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 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대상업무) ①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관광진흥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당연히 따라야 하므로 삭제

제4조(관광객 유치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의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재정지원에 따른 대상,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대상업무)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현행과 같음)

<삭 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됨

<u>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삭 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법제처 의견18-0025 등 참조)이므로, 삭제함.
--	--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4조(관광객 유치지원) 거창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사가 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2020년 이후 30백만원 지원으로 연 5천만원 이하에 해당

4. 작 성 자

문화관광과장 이 해 용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5860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 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 법제처 의견제시 17-0178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자체예산으로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

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지?

• 이유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이하 “송파구조례”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송파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우수관광사업자 육성사업(제1호),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개발 및 홍보(제2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제3호), 관광 기반(시설) 구축 등 관광자원화 사업(제4호),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관광 관련사업 및 관광진흥 사업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제5호)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자체예산으로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에 관한 규정인바, 송파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자체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보조금의 법령상 지급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자체예산으로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광숙박업소와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 및 한옥체험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숙박업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 단체를 군내 숙박시설에 알선하여 투숙한 경우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의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따른 규모,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나 관광
2.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4.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5.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②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제공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업무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 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대상업무) ①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문화관광 버스투어 운영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57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수승대관광지 내 노지에 있는 일반텐트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여 미등록 야영지에서 야영행위를 근절하고, 부당한 이용료 징수규정을 정비하여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야영장 이용료에서 일반텐트(노지) 규정 삭제(안 별표 1 나목)

(단위: 원)

구분	일반텐트(노지)	야영테크	오토캠핑장	비고
이용료	6,000	10,000	25,000	1박 기준

나. 야영장 이용권 서식 삭제(안 별지 제2호서식)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제6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3. 14.~4. 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별지 제1호서식 성별구분 항목 신설)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나목 중 “일반텐트(노지)”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삭 제>▷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의견18-0025 등 참조)이므로, 삭제함.</u>

[별지 제1호서식]

수송대 축제극장 사용 신청서

신청인	주소			
	직업 또는 단체명		전화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사용 시설	기본시설			
	부대설비			
내용	사용시간			
	사용목적			
	행사내용			
	사용인원	<u>총: 명(남: 명/여: 명)</u>		
	비고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송대 축제극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1호의2서식]

수승대 축제극장 사용변경 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생년 월일	(남/여)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전 화 번 호	사무실	
					자택	
행사의 명칭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일시					
	시설사용					
	부속설비					
	그밖의사항					
변 경 사 유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야영장 데크 이용권 서식

야영장 데크 이용권 원본	야영장 데크 이용권 영수증
일련번호: 구분: 요금: 원 발행일: 거 창 군 수	일련번호: 구분: 요금: 원 발행일: 거 창 군 수 (인)

120밀리미터×60밀리미터(백상지 100그램/제곱미터)

오토캠핑장 이용권 서식

오토캠핑장 이용권 원본	오토캠핑장 이용권 영수증
일련번호: 구분: 요금: 원 발행일: 거 창 군 수	일련번호: 구분: 요금: 원 발행일: 거 창 군 수 (인)

120밀리미터×60밀리미터(백상지 100그램/제곱미터)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51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다. 야영장업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생략)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8. 6. 12.>

② 삭제 <2009. 3. 2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 7. 19., 2009. 3. 25.>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09. 3. 25.>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2009. 3. 25.>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 10. 17] [행정안전부령 제12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23조(서식의 지질 등) ① 서식을 포함한 용지의 용도별 지질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기준과 다른 지질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서식에는 용지의 규격과 지질을 다음의 예시와 같이 해당 서식의 우측 하단에 표시한다.

(예시) 210mm×297mm(백상지 80g/m²)

□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을 포함)을 말한다.
4.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시설”이란 수송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에 있는 주차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썰매장, 축제극장을 말한다.

제3조(위치) 수송대관광지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은하리길 2 일대 297,679 제곱미터로 한다.

제3조 삭제<2018.12.26.>

제5조 삭제<2013.12.31.>

제6조 삭제<2013.12.31.>

제4조(시설이용료) ①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되, 주차장 이용료는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다.

② 축제극장 사용·변경·취소 신청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 2서식, 별지 제1호의 3서식에 따른다.

③ 야영장 이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썰매장 이용권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⑤ (항삭제 2015.6.10.)

⑥ 이미 납부한 시설이용료에 대한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시설이용료 감면) ① 주차장 이용료 감면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르되, 관광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유차량과 관광지 활성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다.

② 축제극장을 이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극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거창국제연극제 준비, 행사개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공목적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8.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1. 「주민등록법」상 25세 미만 미혼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12.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6조(입장거절과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술에 만취되어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예상되는 사람
3. 고성방가, 집단놀이 등을 함으로써 타인의 관람, 이용에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관광지 안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수영, 불법주차, 야영, 취사행위 등을 하는 사람
5. 천재지변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대피의 필요성을 느낄 때
6. 그 밖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7조(요금표의 게시) 시설이용료의 요금표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징수) ① 군수는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징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수입금의 사용) ① 이 조례로 정한 시설이용료의 수입금은 관광지의 보존, 시설 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②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거창신씨 요수종중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설이용료의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준용)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시설이용료

가. 주차장 이용료

(단위: 원)

구분	30분 이내	10분 초과당	1일 주차	비고
소형차	500	200	5,000	
대형차	1,000	400	10,000	

○ 소형차 :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대형차 : 승합차(버스), 화물차(트럭)

1) 1회 주차 시 누적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2) 1회 누적시간은 24시간으로 본다.

나. 야영장 이용료

(단위: 원)

구분	일반텐트(노지)	야영데크	오토캠핑장	비고
이용료	6,000	10,000	25,000	1박 기준

다. 썰매장 이용료

(단위: 원)

구분	어린이	청소년·군인	어 른
개인	5,000	6,000	7,000
단체	4,000	5,000	6,000

라. 축제극장 이용료

(단위: 원)

구분	사용시간	이용료
오전	09:00~12:00	50,000
오후	14:00~17:00	50,000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9-58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조성과 권리증진을 도모하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와 해촉 사유를 정함(안 제2조·제3조)
- 다. 위원장 직무와 그 대행을 정함(안 제4조)
- 라. 회의 운영원칙과 간사를 정함(안 제5조·제6조)
- 마.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우선 보호조치와 자료제출 요구 등을 정함(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 1차 추경 시 예산 1,400천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2. 13.~3. 5.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척·기피·회피)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3조(해촉)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우선 조치)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와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보호 조치를 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자료 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과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나. 관련 조문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 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④ (생 략)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작성자 : 행복나눔과장 김 득 환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8822호, 2018. 4. 24, 일부개정]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3. 6.>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3. 6.>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3. 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8. 3. 6.>

1.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6.>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례 09-0395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법령의 규정은 그 자문기관의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문기관을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한 자문기관을 반드시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례 12-0516

「아동복지법」 제1조,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이 법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경우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 ~부터 ~까지

- 원칙 : ‘~부터 ~까지’ 다음에 ‘~의 규정’을 붙여서 뒤에 오는 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
- 예외 : ‘~부터 ~까지’가 열거되는 조문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의 규정’을 붙이지 않아도 문장이 자연스러우므로 ‘~의 규정’을 붙이지 않는다.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59
----------	---------

제출연월일	2019. 3. 18.
제 출 자	보건소장

1. 제안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 위임에 따른 위임조례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자치조례가 통합되어 있음을 명확히 함(안 제명, 제1조)

1) 조례 적용대상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와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2) 제명 :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3) 목적 :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정함(제2조)

1) 진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기준 따른다.

2) 수수료 : 현행) 진료비가 포함된 수수료 규정
변경) 수수료만 알기 쉽게 규정함

다. 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를 정함(제3조)

라. 진료비등의 납부방법을 정함(제4조)

마. 진료비등의 반환 등을 정함(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2. 22.~3. 1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은 자로부터 진료 등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건당 500원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같은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3. 이미 발급된 진단서 등의 재발급: 건당 300원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와 보건진료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진료비(이하 “진료비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응급의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 진료와 예방접종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및 방문 진료
6.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7. 국가, 경상남도 또는 거창군이 개최하는 행사의 의료 지원
8.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9.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11.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12.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13.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4조(진료비등의 납부방법) 진료비등은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 받은 날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

제5조(진료비등의 반환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등을 반환해야 한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등을 면제받은 사람에게 그 면제받은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시행 2017. 9. 19] [법률 제14895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20] [보건복지부령 제604호, 2018. 12. 20, 타법개정]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 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공중보건업무"란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란 제19조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제25조(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診療酬價基準)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5874호, 2018. 12. 11, 일부개정]

-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33호, 2018. 10. 25.]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74.9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83.4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84.8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84.8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30.1원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85.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81.5원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건강진단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4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 20. (생략)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안건번호	의 12-0364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일자	2013. 1. 4.
안건명	경기도 김포시 -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진료환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 규정 신설 등이 가능한지 여부(「김포시보건소 수가조례」 관련)				

• 질의요지

가.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진료환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명시적인 조례 위임 조항이 없음에도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진료비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수수료 등을 규정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제14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김포시보건소 수가조례」에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포함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는 “보건진료소의 진료 수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료

비 등의 감면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65세 이상 노인 등 보건진료소 이용자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일정부분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라 제정한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에 「농어촌 등 보건진료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금지된 것은 아니며, 조례 이용의 편의성, 법령과의 체계, 대상 제도의 상호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정방식(단일조로 할 것인지 복수조례로 할 것인지 여부 등)을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농어촌 등 보건진료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보건의료법”이라 함) 제25조에서는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조례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진료환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근거하여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일반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일반규정인 반면, 농어촌보건의료법 제25조는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을 특정하여 별도로 규율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는 농어촌보건의료법 제25조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다면, 농어촌보건의료법 제25조에서 명시적인 조례위임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수수료에 대한 일반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을 사안의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혹은 진료비 감면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어촌보건의료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도농복합형태의 시장과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

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마목에 따른 자치사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김포시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보건진료소 이용자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농어촌보건의료법 제25조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는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조례로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수가기준을 직접 정하도록 하고 있는 농어촌보건의료법 제25조에 반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진료비의 경우에는 「지역보건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¹⁾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보건소를 이용하는 자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조례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비를 일정 부분 감면해 주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속기관으로 설치·운영하는 보건진료기관인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하는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보건소와 달리 조례로 진료비 감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입법적 의도나 정책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보건진료원²⁾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어촌보건의료법 제25조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되 일정부분에 한정하여 진료비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보건의료법 제21조에서는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진료비 등의 징수 및 감면 등은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할 수 있으므로 농어촌보건의료법의 개별적인 위임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진료비의 결정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전국적 차원에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일의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건진료소에서 징수하는 진료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재정수입으로 ‘해당 기관의 설치·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진료비의 감면에 대하여 자치입법권의 범위에서 스스로 정하고 그 수입과 지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는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하되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책정'하되, 보건진료소 이용자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일정부분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농어촌보건의료법 제25조에 반드시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김포시의 경우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환자에 대하여 이미 진료비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보건의료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노인에 대한 국민건강증진사업 수수료 감면 및 의료혜택이 취약한 농어촌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의 국가법령상의 입법례 3)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이용시설에 관계없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농어촌보건의료법 제25조에서는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료비 등의 감면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책정하되, 65세 이상 노인 등 보건진료소 이용자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일정부분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제1조(목적)를 개정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농어촌보건의료법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고, 제2조(진료비)를 개정하여 진료비에 당초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제16조(진료비 등 수수료 감면)4)를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개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체계상 반드시 하나의 상위 개별 법령이나 규정 대상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하나의 개별 조례를 갖도록 규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 복수의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거나 또는 복수의 상위법령에 관계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위법령이나 규정하려는 대상이 복수인 경우에는 조례 이용의 편의성, 법령과의 체계, 대상 제도의 상호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상위법령에 상응하는 개별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즉, 법령에서 위임한 형식이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단일조례인지 복수조례인지 여부 등 조례 제정의 형식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지 일의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조례 제정의 형식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조례의 체계, 사무의 성격(기관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여부 등),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개별법인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일반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 조례 제정 대상 제도들 간의 상호 유사성 및 여러 법률이나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혼선의 정도와 입법경제성·이용편의성의 비교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7. 7. 회신 의견 11-0124 참조).

결론적으로, 「지역보건법」에 따라 제정한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에 현행 「농어촌 등 보건진료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금지된 것은 아니며, 조례 이용의 편의성, 법령과의 체계, 대상 제도의 상호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정방식(단일조례로 할 것인지 복수조례로 할 것인지 여부 등)을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번호	의 건 18-0025	요청기관	경상남도	회신일자	2018. 3. 13.
안건명	경상남도 창원시 -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려는 경우에 창원시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려는 경우에 창원시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례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례 참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려는 경우에 창원시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중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함)가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3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경찰법」 제3조제5호에서는 국가경찰의 임무로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를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조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법」 및 「도로교통법」의 체계를 고려하면,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서 주·정차 위반에 대해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사무를 같은 법에서 바로 시장등에게 법정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 볼 수 있다는 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별표 6 등에서 차량종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서 과태료의 감면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어 주차 또는

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위반사실이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액수를 부과하는 것이 예정된 사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시장등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9. 13. 회신 10-0269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원칙적으로 조례로써 규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도 포함되므로,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2. 12. 10. 의견제시 12-0358 참조).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소관사무'는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 85 판결 참조), 기관위임사무인 주·정차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및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비교적 더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등의 관련 사무의 처리 주체는 시장등으로서 해당 사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는 견해가 있는바, 향후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분권의 필요성 등 사정변경을 고려한다면, 그런 전제 하에 이 사안의 사무의 성격을 다시 판단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현행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징수하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3조(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진료비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진료비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그 밖의 진료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의 진료비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제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와 검진·진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비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이 공공보건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건기관에 내소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를 면제한다. 이 경우 면제하는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
 7.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실험·검사 등을 공문서로 의뢰할 경우
2.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제7조(징수 및 납부)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진료를 하거나 제증명발급을 한 그날에 징수하며, 현금이나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추징) 거짓으로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제증명발급 수수료(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기준	금액	비고
건강진단서	1통	17,930	혈액검사, 흉부직접촬영, B형간염검사, 간기능2종검사, 빈혈검사, 소변검사, 신체측정 포함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	1,500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에 따른 수수료
운전면허 신체·적성검사	“	4,000	
병 진단서	“	3,700	
기발급 증명서류 추가 발급	“	300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60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양성평등기본법」이 전부개정(2014. 5. 28.)되면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하여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이 조례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재기재사항 삭제(현행 제2조)

나. 법령과 달리 규정하여 법령위배소지 위원회구성 규정 정비함(안 제6조)

1) 삭제 :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2)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

3) 법제처 협업 자치법규 정비과제

다. 불필요한 규정 삭제(현행 제17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3. 8.~3. 28.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수혜 불균형 해소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조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다른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조제2호의 사업자”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과 같은 조 제2항 중 “정압시설”을 “정압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7조,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시가스과 관련한 수혜 불균형 해소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시설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정압시설”이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수혜 불균형 해소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는 보조금지원 일반적인 규정으로 삭제.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입법취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함 <삭 제>▷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의된 용어이므로 삭제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법령은 조례에 언급하지 않아도 그대로 따라야 하므로 삭제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이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관 설치비
2. 정압시설 설치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정압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적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조(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3.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③ (생략)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이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 법에서 정압기 라고 쓰고 있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정압기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적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3.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법령과 달리 규정하여 법령위배소지. 조례에 법령 중복·재기 재사항을 규정할 필요없이 법규정 그대로 적용하여 구성하면되므로 성별규정은 삭제함.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209)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속하여 연임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생략)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⑤ (생략)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삭 제>▷(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209)모든 위원회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상 편의 등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⑤ (현행과 같음)
<삭 제>▷「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근거하여 수당지급하면 되므로 이중기술로 삭제

<삭 제>▷「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다른조례와의관계)에 따르면 되므로 삭제

<삭 제>▷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의견 18-0025 등 참조)이므로, 삭제함.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85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177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8.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외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 법제처협업 자치법규 정비과제

조항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제6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상위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면 되므로 해당내용 삭제

□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시가

스와 관련한 수혜 불균형 해소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시설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 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정압시설”이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의 재원) 보조금은 군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이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관 설치비
 2. 정압시설 설치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정압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적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지원 방법이나 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 시행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6조(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선정·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 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가스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도시가스 관련 유관기관 등의 부서장
 2.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3. 시민단체 대표 등

4. 도시가스사업자의 소속 임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 하거나 장기 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조사업 수요조사서 작성 제출)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보조사업 수요조사서와 5개년 이상 중·장기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7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 공급계획서
2. 사업계획서(공급구역도 및 계획 관망도 등 포함)
3. 보조금 산출 근거자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② 사업자는 보조사업 수요조사서를 작성할 때 대상사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각 호로 구분하여 작성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사업의 선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보조사업 수요조사서에 대하여 사업내용의 적정성,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확정과 함께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사업자는 제10조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 공급계획서
2. 사업계획서(공급구역도 및 계획 관망도 등 포함)
3. 설계도면 및 내역서
4. 보조금 산출 근거자료(실투자비 기준)

5. 주민동의서(해당사업에 한함)

6. 토지사용 승낙서(해당사업에 한함)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제12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예산이나 법령의 범위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조건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 교부) ① 사업자는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전이라도 보조금 지급을 신청 할 수 있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완성검사필증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관계서류 검토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사업 시행 결과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별도 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61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이 조례를 제정 시행한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계속 존치시킬 실익이 없으므로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을 삭제하여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법령 재기재사항 삭제함(안 제2조)

다. 녹색성장위원회 폐지함(안 제3장)

- 1) 2010. 11. 30. 제정 시행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자문기관으로서 존속시킬 이유가 없어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부터 제80조의3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2. 12.~3. 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를 “이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장(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u> 거창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	<u>제1조(목적) 이 조례는</u> 거창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임조례가 아니고 법인용을 삭제하여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u>▷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88 : 자치조례에서 법령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의 정의를 두는 경우에는 법령의 용어규정을 그대로 다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다.

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

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2. “자원순환”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13.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 원칙)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7. (생략)

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경상남도의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 원칙)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7. (현행과 같음)

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경상남도의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삭 제>

▷ 녹색성장위원회 삭제에 따라 삭제

제3장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	<삭 제>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군 소속 실·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거창군의회 의원이나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삭 제>

<삭 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 : 추진 계획, 재정, 법제도,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2.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3.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 관리 등의 분야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기업 고충처리 분야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색성장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삭 제>

<삭 제>

들을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등)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장을 녹색성장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신설 이유> [법률 제9577호, 2009. 4. 1., 일부개정]

사.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자문위원회의 통합운영 근거 마련(법 제116조의2 신설)

- 1) 지방자치단체에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2) 자문기관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기관은 조례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1호, 2018. 10. 30, 일부개정]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8. 13.]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8. 13.]

<신설 이유> [대통령령 제21680호, 2009. 8. 13., 일부개정]

다.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등 신설(영 제80조, 제80조의2 및 영 제80조의3 신설)

- 1) 「지방자치법」에 자문기관의 설치와 유사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등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자문기관은 업무의 특성상 또는 성질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자문기관은 최소한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
- 3) 불필요한 자문기관의 설치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이고, 자문기관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89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30., 2017. 11. 28.>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1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3. "자원순환"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자원순환을 말한다.
1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5. "에너지 자립도"란 국내 총소비에너지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지분 취득을 포함한다)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

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2. “자원순환”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13.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군은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군은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군은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군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군은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군은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

한다.

7. 군은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은 관할구역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군은 관할구역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이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주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와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 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제3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및 제8조에 따른 거창군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거창군 녹색성장 추진계획

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경상남도의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군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군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그 밖에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군수는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이행상황의 점검·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점검·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군 소속 실·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거창군의회 의원이나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 : 추진계획, 재정, 법제도,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2.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3.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 관리 등의 분야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기업 고충처리 분야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색성장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전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등)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장을 녹색성장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1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군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군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⑤ 군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군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1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군수는 군의 공공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물과 교통,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군수는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군수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의 확대·보급에 노력한다.

제22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군수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2.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23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24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할 것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

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3. 군, 기업 및 주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
4. 군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할 것

제25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군수는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군수는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는데 지원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62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현재 인터넷신고와 읍면사무소 방문신고로 운영 중인 대형스티커 판매를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종량제봉투(PP) 50리터를 추가하여 환경미화원의 무게부담을 줄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방법 등 정비(안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별표 4)

- 1)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행 규정 신설
- 2)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가격 규정 신설

나. 종량제봉투(PP) 50리터 판매가격 신설(안 별표 3)

다. 건설폐기물매립장 폐쇄에 따른 규정 등 정비(안 제21조제1항4호)

- 1) 건설폐기물 처리수수료 규정과 별표 5의2 삭제

라.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용어 정비(조례 전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3. 8.~3. 2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4호, 제7조제1항, 제4장 제목, 제15조 조제목·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 조제목·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1조제3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별표 5”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별표 6”을 “별표 2”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별표 6”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PP포대”를 “폴리프로필렌 마대(이하 “PP”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크기·용도·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 제6항) 중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 공급·판매 방법) ① 공공용 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판매자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판매가격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지 아니할 때

2. 군수가 정한 영업상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번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 신고를 한 장소와 다른 장소로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 판매소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제19조 조제목 “(쓰레기 봉투의 매수)”를 “(종량제봉투의 매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봉투의”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로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주지시켜야”를 “주지해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별표 5”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 산정방법과 공급·판매 가격은 별표 3과 같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판매 가격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 도시계획 시설”을 “따른 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공원법」에 의한”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가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 훈령 제 270호)을”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6조 제목 “(권한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등)”을 “(권한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임할 수 있다.”를 “위임한다.”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의2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별표 3으로, 별표 5를 별표 1로, 별표 6을 별표 2로 한다.
별표 3(중전 별표 4)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중전 별표 5) 제목 중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생 략)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제7조에 따른 <u>쓰레기봉투</u>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 <u>별표 5</u>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 중에서 제7조에 따른 <u>쓰레기봉투</u>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u>별표 6</u>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7.(생 략)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에 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u>쓰레기 봉투</u>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u>별표 6</u>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⑥ <삭제2004. 2. 10> ⑦ (생 략) 제4장 <u>쓰레기 봉투</u>의 제작 및 봉투판매소 운영 제15조(<u>쓰레기봉투</u>의 종류 및 용도와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① <u>쓰레기 봉투</u>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현행과 같음)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제7조에 따른 <u>종량제봉투</u>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 <u>별표 1</u>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 중에서 제7조에 따른 <u>종량제봉투</u>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u>별표 2</u>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7.(현행과 같음)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u>종량제봉투</u>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u>별표 2</u>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 제7항과 같음) 제4장 <u>종량제봉투</u>의 제작 및 봉투판매소 운영 제15조(<u>종량제봉투</u>의 종류 및 용도와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① <u>종량제 봉투</u>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

현 행	개 정 안
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골목길 쓰레기 및 자연정화쓰레기 등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 담아야 한다. ② <u>쓰레기봉투</u>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 물질을 첨가한 생분괴성 봉투와 <u>P·P포대</u>로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pp는 이후 별표 1, 3에 나옴 ③ <u>쓰레기 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u>	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골목길 쓰레기 및 자연정화쓰레기 등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 담아야 한다. ② <u>종량제봉투</u>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 물질을 첨가한 생분괴성 봉투와 <u>폴리프로필렌 마대(이하 “PP”라 한다)</u>로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u>종량제봉투의 크기·용도·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u>
<u>제16조(쓰레기 봉투의 제작)</u> ① <u>쓰레기봉투</u>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u>봉투</u>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거창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 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u>쓰레기 봉투</u>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u>쓰레기 봉투</u>를 납품받을 경우에는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 <u>제2항에 따른 쓰레기 봉투사양은 별표 2와 같다.</u> ⑥ <u>쓰레기 봉투</u>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비는 광고주와 계약으로 체결한다.	<u>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u> ① <u>종량제봉투</u>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u>종량제봉투</u>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거창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 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u>종량제봉투</u>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u>종량제봉투</u>를 납품받을 경우에는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u><삭 제></u> ▷별표 2는 규칙으로 정함 ⑤ <u>종량제봉투</u>에 사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비는 광고주와 계약으로 체결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판매소의 신고) ① <u>쓰레기봉투</u>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판매소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u>쓰레기봉투</u>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u>쓰레기봉투</u>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u>쓰레기봉투</u>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신고수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u>쓰레기봉투</u> 공급 및 판매방법) ① 공공용 봉투를 제외한 <u>쓰레기 봉투</u>는 <u>쓰레기봉투 판매소</u>(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쓰레기봉투 판매자</u>(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투공급을 아니할 수 있다. 1. <u>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u> 2. <u>판매자의 영업상 준수 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3. <u>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u> 4. <u>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u>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u>별표 3과 같이 쓰레기 판매소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u>	제17조(판매소의 신고) ① <u>종량제봉투</u>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판매소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u>종량제봉투</u>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u>종량제봉투</u>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u>종량제봉투</u>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신고수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u>종량제봉투</u> 공급 및 판매 방법) ① 공공용 봉투를 제외한 <u>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u> 판매는 <u>종량제봉투 판매소</u>(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u>종량제봉투 판매자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자</u>(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판매가격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u> 공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u>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지 아니할 때</u> 2. <u>군수가 정한 영업상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번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3. <u>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 신고를 한 장소와 다른 장소로 변경한 경우</u> 4. <u>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u>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u>종량제봉투 판매소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u> ▷별표 3은 규칙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제19조(<u>쓰레기 봉투의 매수</u>)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구입한 <u>봉투의</u>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단, 한번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찢어져서 사용이 곤란한 것은 매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u>쓰레기봉투</u> 판매소에 이를 <u>주지시켜야</u> 한다. 제21조(<u>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u>) ① 법 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 략) 2.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u>별표 5와</u>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u>쓰레기봉투의</u> 판매가격으로 한다. 4.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및 처리 수수료는 <u>별표 5의2와</u> 같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 산정은 <u>별표4 제1호 기준에 의하고 봉투판매 가격은 별표4의 2와 같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u> 제22조(<u>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u>) ① 군수는 다음 <u>각호</u>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u>당해</u>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u>쓰레기 봉투</u>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u>하여야</u> 한다.	제19조(<u>종량제 봉투의 매수</u>)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구입한 <u>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u>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u>다만</u>, 한번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찢어져서 사용이 곤란한 것은 매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u>종량제봉투</u> 판매소에 이를 <u>주지해야</u> 한다. 제21조(<u>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u>)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2.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u>별표 1과</u>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u>종량제봉투의</u> 판매가격으로 한다. <u><삭 제></u>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u>종량제봉투 가격 산정방법과 공급·판매 가격은 별표 3과 같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판매 가격은 별표 4와 같다.</u> ▷ 후단은 별표 3 제1호 (주) 1)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 제22조(<u>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u>) ① 군수는 다음 <u>각 호</u>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u>해당</u>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u>종량제봉투</u>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u>해야</u> 한다.

현 행	개 정 안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u>의한 도시계획시설</u>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u>도시공원법</u>」에 <u>의한</u>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u>의한</u> 공원을 포함한다) 3. 낚시터, 약수터,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u>군수가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 규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을</u>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u>하여야</u> 한다. <u>제26조(권한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등)</u>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u>위임할 수 있다.</u> <u>제27조(시행규칙)</u>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u>다른 군계획시설</u>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u>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u>」에 <u>다른</u>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u>다른</u> 공원을 포함 한다) 3. 낚시터, 약수터,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u>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를</u>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u>해야</u> 한다. ▷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 지침」으로 변경됨. 또한 조례에서 훈령이나 지침을 직접 인용하여 준용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아 문장정비_ <u>제26조(권한위임)</u>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u>위임한다.</u> ▷ 위임을 확정적으로 규정해야 이 조문만으로도 위임의 법적효력발생 <u><삭 제></u>

[별표 3]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가격(제21조제2항 관련)

1.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text{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times \text{수수료자립도} + \text{제작비} + \text{판매이익}$$

- (주) 1)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압록카, 밀폐식 압축용기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처리시설·가스포집시설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함.
- 2) 수수료자립도는 거창군의 기존 자립도·대행체제에서 직영으로 변경될 때의 부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률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함.
- 3) 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 4)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퍼센트**를 적용, $\text{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times \text{수수료자립도} \times 0.09$ 로 산정함.

2. **종량제봉투** 공급·판매 가격

(단위: 원)

용량	공급 가격	판매 가격	비고
3리터	45	50	○1매당 가격 ○판매이익 9퍼센트 <신 설>
5리터	91	100	
10리터	182	200	
20리터	364	400	
50리터	819	900	
100리터	1,638	1,800	
<u>50리터</u> (pp)	<u>964</u>	<u>1,060</u>	
100리터 (pp)	1,929	2,120	

【별표 4】 <신 설>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판매 가격(제21조제2항 관련)

규격별	공급 가격	판매 가격	비고
1,000원권	910원	1,000원	○1매당 가격 ○판매이익 9퍼센트
2,000원권	1,820원	2,000원	
3,000원권	2,730원	3,000원	
4,000원권	3,640원	4,000원	
5,000원권	4,550원	5,000원	
10,000원권	9,100원	10,000원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03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법제처 협업 자치법규 정비과제

대상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제18조	공공용 봉투를 제외한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7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위법령 규정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과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사무실, 화장실쓰레기등 가정쓰레기와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 별표 5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6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대행"이란 군수를 대신하여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폐기물"이란 구조물의 철거,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잔재물(벽돌, 블록등),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및 토사류를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군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2004.02.10)

제4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5.12.30.)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4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이하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

③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300kg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 한다.

제2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제6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군수는 법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지역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6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⑤ (삭제 2004.02.10)

⑥ (삭제 2004.02.10)

⑦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이 기록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기물 배출자가 제7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해당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제8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고,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처리할 수 있으며, 자가 운반하는 경우, 배출자는 사전에 그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2004.02.10)

제10조 삭제(2004.02.10)

제11조(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개인, 단체 등에 일 정비율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지정을 하여야 하며 그 대행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대행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계속 대행하게 할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삭제(2015.12.30.)

제13조 삭제(2015.12.30.)

제14조 (삭제 2000. 9. 20)

제4장 쓰레기 봉투의 제작 및 봉투판매소 운영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①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골목길쓰레기 및 자연정화쓰레기 등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 물질을 첨가한 생분해 물질을 첨가한 생분괴성 봉투와 P·P포대로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 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④ (삭제 2004.02.10)

제16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거창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 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 봉투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납품받을 경우에는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쓰레기 봉투사양은 별표 2와 같다.

⑥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비는 광고주와 계약으로 체결한다.

제17조(판매소의 신고)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판매소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신고수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 ① 공공용 봉투를 제외한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투공급을 아니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 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이 쓰레기 판매소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4.02.10)

④ (삭제 2004.02.10)

제19조(쓰레기 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구입한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단, 한번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찢어져서 사용이 곤란한 것은 매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0조 삭제(1999.07.15)

제5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5의2와 같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 산정은 별표 4 제1호 기준에 의하고 봉투판매 가격은 별표 4의2와 같다.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 (삭제 2004.02.10)

④ (삭제 2004.02.10)

제2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 한다.)

3. 낚시터, 약수터,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료의 감면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제6장 장려금 등

제24조(장려금 및 포상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공공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영농폐기물(폐비닐, 반사필름, 농약용기-봉지, 병, 플라스틱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집하여 배출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지정하여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전개한다.

③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집활동 우수 기관? 단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5조 삭제 <2019.4.3.>

제26조(권한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